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12월 20일

발 의 자 : 박수빈, 강동길, 김 경,
김기덕, 김성준, 김인제,
박강산, 박승진, 박유진,
박철성, 봉양순, 서준오,
성흠제, 송도호, 송재혁,
아이수루, 왕정순, 우형찬,
, 유정희, 이민옥, 이병도,
이상훈, 이소라, 이승미,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
임규호, 임만균, 임종국,
전병주, 정준호, 정진술,
최기찬, 최재란, 한 신
의원(36명)

1. 제안이유

- 기념일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다중운집으로 혼란상황 발생에 대하여 자치구에 예측 및 대비 의무를 부과하고, 일정 인원 이상의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
- 나. 시장으로 하여금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준하는 밀집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43조의3 신설).
- 다. 자치구청장이 대규모 인원 밀집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6조제6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확보하고,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인원 밀집 시의 안전관리계획) ① 시장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밀집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밀집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등은 영 제73조의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”은 “밀집안전관리계획”으로, “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”는 “시장”으로 본다.

제5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43조의3에 따른 밀집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

로 수립하고,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6조(재정지원) ① ~ ⑤ (생략)

<신 설>

장”으로 본다.

제56조(재정지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43조의3에 따른 밀집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,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문서번호

2022121900000006

미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수빈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12.19.

회신일 : 2022.12.22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침부 근거 규정
3. 미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시의 책무)에 제5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시의 책무)제5항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5
e-mail : kjh0123@seoul.go.kr